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추천알고리즘 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 등〉  
■ 차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48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목 차

|                                                     |    |
|-----------------------------------------------------|----|
| I . 제안경 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추천알고리즘 등 정의 신설(안 제2조제14호 신설 등) .....             | 3  |
| 2. 추천알고리즘 사업자 규제 강화(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 신설 등) ..... | 9  |
| 3.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안 제44조의16 및 제44조의17 신설) .....      | 23 |
| 4. 국외 사업자 적용(안 제44조의18 신설) .....                    | 28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차지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12.

다. 회 부 일 : 2025. 9. 1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정보·혐오표현 확산을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부재하여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추천알고리즘, 시스템적 위험 등 개념 정의(안 제2조제1항)

나.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화(안 제44조의11)

다. 이용자의 알고리즘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보장(안 제44조의12)

라.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의무  
(안 제44조의13)

마.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과 보호조치(안 제44조의14)

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안 제44조의17)

### Ⅲ. 검토의견

#### 1. 추천알고리즘 등 정의 신설(안 제2조제14호 신설 등)

##### 가. 개정안 요지

- “추천알고리즘”, “프로파일링”, “시스템적 위협” 및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제1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13. (생략)<br><u>&lt;신설&gt;</u> | 제2조(정의) ① -----<br>-----.<br>1. ~ 13. (현행과 같음)<br>14. “ <u>추천알고리즘</u> ”이란 이용자<br>· 콘텐츠·환경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콘텐츠·상품·서비스를 자동 또는 준자동으로 배열·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br>15. “ <u>프로파일링</u> ”이란 개인의 선호·정치성향·건강·경제상황 등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분석·예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br>16. “ <u>시스템적 위협</u> ”이란 추천알고리즘이 사회·경제·문화· |
| <u>&lt;신설&gt;</u>                                                         |                                                                                                                                                                                                                                                                                                      |
| <u>&lt;신설&gt;</u>                                                         |                                                                                                                                                                                                                                                                                                      |

| 현행     | 개정안                                                                                                                                                                           |
|--------|-------------------------------------------------------------------------------------------------------------------------------------------------------------------------------|
| ② (생략) | <p><u>정치 등 공익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말한다.</u></p> <p><u>17.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국내 활성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

#### 다. 검토사항

-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많은 정보통신서비스가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의 선호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콘텐츠나 광고를 추천해주는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알고리즘을 적용한 콘텐츠 추천은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나 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콘텐츠만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서비스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될 우려가 있고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 안 제2조 제14호부터 제17호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알고리즘 관련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여 규범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프로파일링’의 정의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개인의 선호 등을 분석·예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이용 내역을 의미함.
- 그런데,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sup>1)</sup>하면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여 개정안에 따른 ‘개인정보’와는 구체적인 의미, 용례에서 차이가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용어 사용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링’ 정의 규정의 ‘개인정보’를 ‘이용 정보’나 ‘이용자 정보’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 또는 제공·이용·대조·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연계정보 생성·처리를 요청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계정보 생성·처리가 불가피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 둘째, ‘시스템적 위험’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익’<sup>2)</sup>, ‘부정적 영향’ 등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고 실제 규정인 안 제44조의13 제1항 각호를 통해서야 의미가 구체화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양수·합병 등 인가 시 심사사항을 규정할 때 ‘공익’을 사용하나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규정<sup>3)</sup>하여 수범자가 ‘공익’의 의미를 대강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음.

○ 그리고, ‘시스템적 위험평가’가 안 제44조의13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기보다는 수범자 관점에서 의미가 명확해지는 실제 규정에 약칭 형태로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관련하여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

---

2) 헌법재판소는 “‘공익’이라는 개념은 이처럼 매우 추상적인 것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전원재판부).

3)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공사'4)를 인용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함.

- 그런데, 「저작권법」 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영리 목적'을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의미·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수범대상은 대부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점과 개정안을 통해 도입되는 추천알고리즘 규제 및 시스템적 위험평가 등은 주로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정의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프로파일링'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추천알고리즘에 활용되는 행태 정보 등을 포괄하지 못해 불완전한 정의가 될 수 있어 개인정보가 아닌 이용자 정보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추천알고리즘이 공익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

---

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그 위협의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존재하며,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의 타 조항과의 일관성을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2. 추천알고리즘 사업자 규제 강화(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 신설)

### 가. 개정안 요지

- 추천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약관 등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44조의11 제1항).
  - 추천알고리즘 사용 여부 및 기본 작동원리(제1호)
  - 추천 결정에 영향이 큰 매개변수·가중치의 범주와 설명(제2호)
  - 추천에 사용되는 이용자 정보 항목·수집·이용 목적(제3호)
  - 오류·편향 시정 절차 및 이용자 피드백 반영 방법(제4호)
-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투명성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함 (제2항)
  - 추천알고리즘 구조·주요 변경 이력(제1호)
  - 제44조의13에 따른 시스템적 위험평가 결과 및 완화조치 현황(제2호)
  -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불만처리 현황(제3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호)
-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고 ‘추천 결과 및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 요구 시

지체 없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44조의12 제1항).

- 추천알고리즘의 해제·재개 요구
  - 특정 유형 콘텐츠의 추천 제외 요구
  - 프로파일링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
  - 추천 결과 및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 요구
-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제1항의 권리 행사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에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3항).
-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다음에 미치는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계획을 수립·이행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44조의13 제1항)
- 선거·여론형성 등 민주적 절차에 미치는 영향
  -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갈등 조장
  - 허위정보·혐오표현·차별 조장
  - 아동·청소년 보호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악
  - 불법정보 유통 조장 및 신체적·정신적 위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험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검증 절차를 둘 수 있고(제2항)
-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음(제3항)

-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만으로 이용자에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안 제44조의14 제1항),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제2항).
-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3항).
-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추천알고리즘 설계·운영·개선 과정에서 오류·편향을 상시 검증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44조의15 제1항)
-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제1항의 검증 결과, 알고리즘 변경 이력 등 관련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제2항),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 시 제2항의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3항).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44조의11(추천알고리즘 투명성 및 정보공개) ① 추천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현행 | 개정안                                                                                                                                                                                                                                                                                                                                                                                                                                                                                                                    |
|----|------------------------------------------------------------------------------------------------------------------------------------------------------------------------------------------------------------------------------------------------------------------------------------------------------------------------------------------------------------------------------------------------------------------------------------------------------------------------------------------------------------------------|
|    | <p><u>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약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u></p> <p><u>1. 추천알고리즘 사용 여부 및 기본 작동원리</u></p> <p><u>2. 추천 결정에 영향이 큰 매개 변수·가중치의 범주와 설명</u></p> <p><u>3. 추천에 사용되는 이용자 정보 항목·수집·이용 목적</u></p> <p><u>4. 오류·편향 시정 절차 및 이용자 피드백 반영 방법</u></p> <p><u>②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투명성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투명성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u></p> <p><u>1. 추천알고리즘 구조·주요 변경 이력</u></p> <p><u>2. 제44조의13에 따른 시스템적 위험평가 결과 및 완화조치 현황</u></p> <p><u>3.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불만처리 현황</u></p> <p><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p>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 설&gt;</p> | <p><u>사항</u></p> <p>③ 제2항에 따른 투명성보고서의 <u>서식·작성기준·제출방법 및 공개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투명성보고서를 검토하여 <u>필요한 경우 보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u></p> <p>제44조의12(이용자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①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쉽고 <u>명확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u></p> <p>1. <u>추천알고리즘의 해제·재개 요구</u></p> <p>2. <u>특정 유형 콘텐츠의 추천 제외 요구</u></p> <p>3. <u>프로파일링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u></p> <p>4. <u>추천 결과 및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 요구</u></p> <p>②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제1</p>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p> | <p>항제4호에 따른 설명 요구 시 지체 없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제1항의 권리 행사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에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4조의13(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① 대형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미치는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계획을 수립·이행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거·여론형성 등 민주적 절차에 미치는 영향</li> <li>2.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갈등 조장</li> <li>3. 허위정보·혐오표현·차별 조장</li> <li>4. 아동·청소년 보호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악</li> <li>5. 불법정보 유통 조장 및 신체적·정신적 위해</li> <li>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li> </ol>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 설&gt;</p> | <p><u>사항</u></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험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검증 절차를 둘 수 있다.</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세부 항목·기준, 독립검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의14(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의 제한) ①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만으로 이용자에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p>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p> | <p>경우</p> <p>2.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p> <p>③ 제2항에 따라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추천 알고리즘 사업자는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44조의15(내부통제 및 기록보존) ①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추천알고리즘 설계·운영·개선 과정에서 오류·편향을 상시 검증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제1항의 검증 결과, 알고리즘 변경 이력 등 관련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 시 제2항의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

## 다. 검토사항

- 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는 추천알고리즘 사업자에게 ① 추천 알고리즘 관련 내용 약관 명시 및 투명성보고서 제출, ② 이용자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보장, ③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 제한 및 보호조치, ④ 추천알고리즘 내부통제 및 기록보존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의 추천알고리즘이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의 대상과 내용의 명확성, 영업의 자유 보호 필요성, 다른 법률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추천알고리즘 투명성 및 정보공개

- 안 제44조의11 제1항은 추천알고리즘 사업자에게 추천알고리즘의 사용 여부와 기본 작동원리, 추천 결정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가중치 등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 화면이나 약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 제2항은 추천알고리즘 구조·주요 변경 이력, 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보완조치 현황 등 추천알고리즘 관련 현황을 담은 투명성보고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추천알고리즘 사업자의 추천알고리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다만, 안 제44조의11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추천알고리즘 관련 정보를 약관 등으로 공개하면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열람이 가능해지는데,  
  
추천알고리즘 기본 작동원리, 추천 결정에 영향이 큰 매개변수·가중치, 이용자 정보 항목 등은 사업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공개범위를 하위법령을 통해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추천 결정에 영향이 큰 매개변수·가중치가 세부적으로 공개되면 추천알고리즘을 악용하여 추천 콘텐츠를 조작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추가로,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를 약칭으로 정의할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대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관련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약관 명시 의무 및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의 수범 대상이 추천알고리즘을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해 차등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이용자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 안 제44조의12 제1항은 이용자가 추천알고리즘의 해제·재개, 특정 유형 콘텐츠의 추천 제외 등 추천알고리즘 적용에 관하여 사업자에게 선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추천 결과와 주요 결정요인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업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특히, 제3항을 통해 사업자가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간접적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추천알고리즘을 통한 추천 결과와 이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은 콘텐츠 추천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이용자에게 제한 없이 부여하기보다는 사업자도 정당한 사유를 들어 일부 설명·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설명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복잡한 알고리즘 구조를 즉각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술적·운영적 한계가 존재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설명 요구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정당한 사유가 존재

할 경우 사업자가 설명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공개거부권’을 인정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 안 제44조의13은 추천알고리즘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항목을 정하여 평가하고 사업자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추천알고리즘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추천알고리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추천알고리즘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회적 영향력 또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영향력을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음.
- 다만, 시스템적 위험 완화계획에 포함되는 완화 조치의 구체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데, 시스템적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추천알고리즘의 설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런데 추천알고리즘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토대로 시스템이 자체적인 연산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구조이므로,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인 결과값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유로 추천알고리즘의 설계 또는 작동 방식을 변경하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형성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스템적 위험평가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완화조치는 이미 투명성보고서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완화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중복규제 우려가 있어 해당 조문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의 제한

- 안 제44조의14 제1항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추천알고리즘 사업자가 자동화된 처리만으로 이용자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자동화된 처리에 따른 의사결정을 적법하게 하더라도 사업자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추천알고리즘에 활용되는 정보는 일반

적으로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나 선호도 등에 관한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개인에게 법적 효력이 미치는 의사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추천알고리즘을 통한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것 중 법적 효과의 발생에 관한 부분은 현실적인 입법필요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이용자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경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금지의무가 부과되는 의사결정의 범위를 사업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의사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중대한 영향’의 개념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추천알고리즘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추천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의 전반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나, 법 문언상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3.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안 제44조의16 및 제44조의17 신설)

#### 가. 개정안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안 제44조의16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반복 위반 시 해당 서비스의 국내 제공 제한 등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년도 총 매출액의 3퍼센트 또는 10억원 중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44조의17 제1항).
  - 제44조의11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 또는 투명성보고서를 제출·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 제44조의1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 제44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위협평가·완화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4조의14를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을 한 경우
-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7까지는 대한민국 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함(안 제44조의18 제1항).
- 국외 사업자는 국내 이행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연락처·주소를 공개하여야 함(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이행 담보를 위하여 국외 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 예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3항)
- 제44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와 제44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 제1항 신설)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 | 제44조의16(시정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반복 위반 시 해당 서비스의 국내 제공 제한 등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u>&lt;신 설&gt;</u> | 제44조의17(과징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년도 총 매출액의 3퍼센트 또는 10억원 중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 1. 제44조의11제1항·제2항을                                                                                 |

| 현행 | 개정안                                                                                                                                                                                                                                                                                        |
|----|--------------------------------------------------------------------------------------------------------------------------------------------------------------------------------------------------------------------------------------------------------------------------------------------|
|    | <p><u>위반하여 정보공개 또는 투명성보고서를 제출·공개하지 아니한 경우</u></p> <p>2. <u>제44조의1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u></p> <p>3. <u>제44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평가·완화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p> <p>4. <u>제44조의14를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을 한 경우</u></p> <p>② <u>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다. 검토사항

### ☐ 시정명령(안 제44조의 16)

- 안 제44조의16은 추천알고리즘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위반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추천알고리즘 관련 조문에 따른 법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업자에 대한 명령이 다소 포괄적일 수 있는 시정명령과 달리 영업정지의 경우 침익적 효과가 상당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사유와 기간이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함에도 일반적인 근거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이나 위반행위 반복 시 국내 영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국내 서비스 제한은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 처분이어서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 그 외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예측하기 어려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국내 서비스 제공 제한과 같은 구체적이고 침익적인 행정처분은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추천알고리즘 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정명령 근거 조항을 두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임.

#### □ 과징금 부과(안 제44조의17)

- 안 제44조의17은 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은 원래 위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사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대신하는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활용되는 변형된 의미의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
- 개정안의 과징금 역시 각 위반행위로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이는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의 성격을 가진 변형된 과징금으로 볼 수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는 경제적 이익 환수라는 목적을 지니며, 불법촬영물 관련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 사전 고지 의무 등 유사한 의무의 미이행에 대해서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은 다소 과도하므로,

개정안의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를 과징금이 아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 4. 국외 사업자 적용(안 제44조의18 신설)

##### 가. 개정안 요지

-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7까지는 대한민국 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함(안 제44조의18 제1항).
- 국외 사업자는 국내 이행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연락처·주소를 공개하여야 함(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이행 담보를 위하여 국외 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 예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3항)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제44조의18(역외적용) ①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7까지는 대한민국 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한다.</p> <p>② 국외 사업자는 국내 이행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연락처·주소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p> |

| 현행 | 개정안                                             |
|----|-------------------------------------------------|
|    | 이행 담보를 위하여 국외 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 예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다. 검토사항

- 안 제44조의18은 추천알고리즘에 관한 신설 규정이 국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필요한 조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에서도 국외사업자에 대한 적용 근거<sup>5)</sup>를 두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추천알고리즘 관련 규정의 역외적용 근거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이행담보를 위해 국외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 예치 등을 명령하는 것은 국내사업자에게 부과되지 않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통상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외 추천알고리즘 관련 사업자에게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통상 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
|--------------|
| 문 의 처        |
| 02)6788-5230 |